

2026년 제3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임용시험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현황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원소속
투자유치부 투자유치1과	부산지역 국내외 투자유치	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부산시
투자유치부 투자유치2과	경남지역 국내외 투자유치	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경상남도

※ 임용기간은 1년(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응시원서는 부산 혹은 경남지역 1개분야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첨단산업· 서비스· 항만물류 투자유치	○ 국내외 투자유치 ○ 증액투자 및 잠재투자자 발굴 ○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

※ 투자유치1,2과 동일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2조(임용승인신청 등)

4. 보수수준

○ 보 수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 하한액 원칙 ▶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18세 이상(상한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자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다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첨단산업·서비스·항만물류 투자유치	행정7급 (일 반 임기제)	◇ <u>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한 가지 이상) 능통자</u>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및 경력 > -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외국(정부)기관,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u>국제통상, 무역, 국제교류, 투자유치, 해외영업, 홍보·마케팅 관련 분야</u>

※ 자격요건은 투자유치1·2과 동일하며 「경력요건」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포함

• 한국어 PPT 작성,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중 선택하여 발표 가능

※ 외국어 능력의 경우, 면접 시 회화능력 검증(5분 이내) 실시 예정

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면접 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상·중·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 단, 동률이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6. 8. 31.(월) ~ 9. 11.(금)	'26. 8. 31.(월) ~ 9. 11.(금)	'26. 9. 23.(수) 예정	'26. 10. 2.(금) 예정	'26. 10. 12.(월) 예정

※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31.(월) ~ 9. 11.(금) 18:00
-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우.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통상환증서 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051-979-5042) 확인 후 발송
-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 동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2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되어야 함)
-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응시지역에 따라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 정부 수입증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별지 제2호】
3	이력서 1부 ▶ 응시자격 관련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자필 서명 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형식·구성은 자유) 1부 ▶ 자필 서명 필수 ※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내외 작성)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별지 제5호】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6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첨부(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u>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u>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서류,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u>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u> ※ 해외 경력은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 임용 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예 : 주당 30시간) ※ 발행기관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서명 필수) 또는 [붙임 2] 응시자 제출 서류 서식 중 ‘별지 ’ 참고. ‘경력증명서’ 서식 활용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 ▶ <u>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u>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근무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기간의 산출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입금명세서, 보수내역,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7호】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 주민등록초본 제출(1부) 시, 전체 주소 기입, 병역 사항 포함	【별지 제8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연 번	제출 서류	비 고
1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및 정보화 등 자격증 사본 ▶ 면접시험일 기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유효	
3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	
4	학위(연구)논문 사본·저서·특허·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우편도착) 익일까지로 한정하며, 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절대 불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미제출시 인정 불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 필요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전일(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 희망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11. 기타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부산 또는 경남 1곳만 지원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은 개별 통지 없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관련 : 기획행정실 총무과(☎ 051-979-5042)
 - 직무관련 : 투자유치부 투자유치1과(☎ 051-979-5243) <부 산>
투자유치부 투자유치2과(☎ 051-979-5264) <경 남>